

# 第185回國會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7年10月31日(金)  
場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 議事日程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5.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7. 政治資金에關한法律과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關한請願

### 審査된案件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金重緯議員外 156人 發議) ..... 2面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122人 發議) ..... 2面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 2面
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重緯議員外 156人 發議) ..... 2面
5.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122人 發議) ..... 2面
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 2面
7. 政治資金에關한法律과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關한請願(安商守議員 紹介) ..... 9面

(14시05분 개의)

○委員長 金重緯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6차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빈 지 달 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갈래로 3당총무와 저의 정치개혁 관련입법에 관한 협상을 인내심있게 조용히 지켜보아 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의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현대화 시켜보자는 데 근본뜻을 가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의 經過報告를 조금 드린다면 1997년 7월 30일에 제184회 국회 제1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던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審査對象法案을 분담심사하기 위해서 제1, 제2, 제3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소위는 11차례, 2소위는 10차례에 걸친 심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미합의 사항만 3당총무와 저에게 넘겨져서 협상을 벌인 결과 나온 안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안입니다. 그 동안 9월 23일부터 10월 31일 오늘까지 무려 23차례에 걸친 회담을 거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 연장을 해서까지 회의를 심도있게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동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간사간에 합의한 바대로 두 법안을 당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金重緯議員外 156人 發議)
2.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122人 發議)
3.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4.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金重緯議員外 156人 發議)
5.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122人 發議)
6.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14시07분)

○委員長 金重緯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金珍培議員님 나오셔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및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해서 審査經過와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珍培議員 새정치국민회의소속 金珍培議員입니다.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및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7월28일 金重緯議員外 15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1997년8월26일 朴相千·李廷武議員外 1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1997년8월23일과 8월26일에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이를 1997년 8월28일 제184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은 제1 소위원회,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제2 소위원회로 하여금 각각 분담하여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는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1997년 8월29일부터 1997년9월1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심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1997년9월18

일 제5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미합의사항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위하여 이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총무가 참여하는 회담에 부쳤던 바 1997년9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23차에 걸친 회담에서 이상의 법안을 통합 절충하여 與野 合意單一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의 설치 및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둘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지구당 대표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야유회등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의 이익 제공을 일체 할 수 없도록 하고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의 경우에도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축의·부의금품의 제공만을 허용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친족, 정당의 당직자등 특정대상과 금액범위안에서의 행위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에 있어 정당, 후보자 등의 演說會를 屋內로 제한하고 그 회수도 현행 시·군·구마다 3회 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 이내와 시·군·구마다 1회로 축소하고 넷째, 대통령선거시 小型印刷物은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소속당원을 위한 정강·정책 홍보물은 책자형 1종으로 축소하고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도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시 50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시 20회로 각각 축소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지를 명문화하면서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자원봉사자를 빙자하여 대규모 인원을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행 150회 이내중 50회만 국고보전하던 新聞廣告回數를 70회로 줄이되 70회 전체를 국고보전하도록 하였고 현수막의 수량도 구·시·군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면서 제작·게시비용을 국고보전토록 하였으며 후보자가 작성·배부하던 소형인쇄물을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토록 하였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국고보전토록

하는 등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公營制를 확대 하였습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義務規定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관련자료를 당해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일곱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법에 대한 調查權을 명시하고 여덟째, 선거법과 다른 죄의 競合犯은 이를 분리 심의하여 따로 선고토록 하였으며 아홉째, 지방자치단체장의 選舉關聯行爲 禁止期間을 선거기간 개시전 30일로 통일하고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 이상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인 방문이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복구행위등 금지기간중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公營放送社의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 보도토록 의무화하고,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방송사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대통령선거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행하는 방송연설을 각 11회로, 經歷放送 회수를 각 8회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30회로 각각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에 대하여도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放送媒體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대통령후보자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후보자의 反論報道請求權을 신설하여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열두번째, 선거운동기간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세 번째,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多數議席順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열네 번째,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에 출마시 선거일전 60일까지 辭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대통령이 闕位된 경우에 이미 후임대통령의 선거가 실시되어 당선인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부터 임기 개시토록 하였고 열일곱 번째, 대통령 선거기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기타 여러 條文에 산재해 있는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유형을 제112조에서 통합 정리하고 음식물의 통상적인 범위와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代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경유착의 피해를 방지하고 與野間 정치자금의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둘째, 정치자금을 양성적 합법적으로 모금하게 하기 위하여 親族間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지정기탁금제 폐지, 음성자금수수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각 후원회의 年間寄附限度를 2배로 상향조정하면서 후원회의 금품모집 방법에 통신에 의한 모금방법과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방법을 추가하고, 公職選舉 선거기간중에는 집회에 의한 모금과 광고에 의한 모금을 각 1회씩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우편 통신 및 정액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이 건전한 政策政黨 육성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중 100분의 20 이상을 정당의 政策開發費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넷째,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을 정당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기부금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여섯째, 선거운동기간중에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에도 募金을 호소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바자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物品價額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여덟째, 정당 등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정액영수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하며 아홉째,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의 會計報告期間을 종전의 20일 이내에 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결산보고를 종전에는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후 4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사항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2건의 법률안이 輿野合意에 의하여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시어서 提案說明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重緯 金 委員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법률안이 우리 전체회의에 오기까지는 엄청난 우여곡절과 격론과 또 법률전문기관의 자문까지를 얻어 합의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다 조문 하나하나마다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마는 政治改革이라고 하는 큰 틀을 본다면 향후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아쉬운 대로 그리고 미진한 대로 시간에 쫓겨 여기까지밖에는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좋은 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제안되고 협의되어서 우리 정치가 한층 높은 발전단계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계속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大體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瑕疵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말씀을 해주시고, 가급적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부분은 그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대체토론 시간을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 委員님!

○趙贊衡委員 먼저 議事進行發言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特委에서 정치개혁 관계 법안을 특위위원장과 3당 총무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代案을 내놓으셨는데 우선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서 3당 총무와 위원장께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합의된 것 아닙니까. 字句 정도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임해 가지고 위원장과 3당 총무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특위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字句修正 이런 것은 빼고 말이지요. 그것부터 정확하게 위원장께서 해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重緯 보시면 아시겠습니까마는 각당이 제안한 案中에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 제안한 사항이 변질되어서 나온 것도 있고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법안에 담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논의를 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그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면 다시 3당 총무와 협의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이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産苦에 산고를 거쳐 이 자리까지 온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3당 총무와 저희 모두가 있는 지혜를 전부 짜서 그리고 서로가 人格을 걸고 양해에 양해를 거듭해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참고 그 내용을 좀더 보완하기 위한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金重緯 예.

○趙贊衡委員 그러면 제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매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選舉犯罪調查權, 이것은 명시조항인데 수사권이 아니고 조사권입니다. 이 관계인에 대해서 質問調查하거나 관계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애초 우리 야당은 司法警察權을 選舉管理委員會에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내놨는데 지금 제한적인 조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컨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해서 송치할 수 있는 절차도 지금 여기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조사해서 고발하는 데 참고자료로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또 확증을 가지고 고발했는데 검사가 不起訴處分했을 경우 裁定申請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選舉犯罪調查權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계재를 하셨는지……

○委員長 金重緯 그 조항이 바로 野黨案과 興黨案을 절충해서 만든 案입니다. 여당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일체의 調查自律權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안으로,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搜查權과 더불어 범죄의 현상이 있음을 알 때에는 즉시 選管委에 신고하고 선관위는 그 즉시 調査에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신고의 濫發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人力이 그것을 전부 커버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신고를 받은 選舉管理委員이 그 신고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現場調查할 수 있는 권리만 주고 수사는 司法的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사법적 권리까지는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한 案이지요.

○崔鉛熙委員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政治特委 제1소위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누차 토론되고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選管委는 실질적으로 調查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고 있더라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調查權으로 한 이유는 지금 수사권을 주느냐, 조사권을 주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선관위의 의견은 선거관리위원회는 憲法機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선관위 직원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헌법기관의 소속직원이 檢察의 搜查指揮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까 검사의 지휘는 받지 않겠다. 다만 우리는 調查權만 가지고 필요할 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案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여기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3당 총무님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희 제1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거의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평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武器

平等의 原則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합의된 내용을 보면 選舉公營制를 확대하는 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만 國民負擔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선관위가 고발하는 데에 참고자료 첨부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검찰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무혐의했을 경우, 작년 總選때도 선관위에서 여러 사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전부 無嫌疑해 버렸어요.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고발에 필요한 資料添附 차원에서 조사권을 인정해 주었다면 선관위가 성실히 조사해서 고발했을 경우 검찰이 恣意的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도 주어져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趙贊衡委員 아니, 選舉管理委員會에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을 경우에는 裁定申請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그래도 무엇인가 조사권의 실속이 있지요. 그것도 없이 한다면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증거판단은 檢察이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사해서 관계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고발한다고 합시다. 증거판단은 檢察가 해요. 선관위가 조사한 것 아무 소용없다.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無嫌疑해 버린다고요.

작년에도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람 수십 명 있었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것은 體系上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하셨다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裁定申請權을 선관위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우리 趙委員님의 의견은 회의록에 그렇게 담아놓고……

○趙贊衡委員 아니, 이것은 法司委에서도 문제삼을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면 뭐해요.

○委員長 金重緯 법사위에서 문제삼는 것은 또

거기서 문제삼을 일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총무회담으로 가야 돼요.

○趙贊衡委員 아니, 내용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金重緯 그것이 본질내용이지요.

○趙贊衡委員 그것이 무슨 본질내용입니까?

○委員長 金重緯 지금 裁定申請制度가 우리 나라 選舉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지 않습니까?

○趙贊衡委員 그러나 限定的으로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委員長 金重緯 지금 그것을 저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이 회의는 안 되지요.

○趙贊衡委員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 체계상의 문제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그러면 체계는 法司委에 넘겨 봅시다.

그리고 秋美愛 委員님께서 아까부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같은데 말씀하시지요.

○秋美愛委員 지금 趙贊衡 委員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總務案 중 정치자금을 양성적 합법적으로 조달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간을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수수하는 때는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案을 보니까 제30조제8호를 신설하면서 그 조문 정리를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 다만, 政治資金을 주거나 받은 者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조항에서 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 좀 막연해서 이것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하든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違法性까지는 인정되지만 친족간에 처벌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責任阻却하는 그런 표현으로 정리가 좀 精緻하게 되어야겠다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또 하나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으로 광범위하게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좁혀서 부양가족범위만 한정해서 남편이 후보자인데 부인이

어디가서 돈 몇 천만원 빌려와서 선거자금으로 쓴다한들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재계 유력자가 형이고 그 아우가 政治人인 경우에 돈을 주는 것은 부양가족도 아닌데 그것은 政治資金인 동시에 정경유착의 하나의 표본적인 예도 될 수 있어서 막연히…… 四寸間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촌은 재계에서 이름난 분이고 또 사촌아우는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것도 차단해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777조에 의한 친족범위로 하지 말고 부양가족범위로 한정해서 정치자금 유착의 고리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重緯 협의할 적에 저는 親族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사촌이라든지 민법상의 친족은…… 사촌끼리 도와주는 것은 美風良俗인데 그것까지를 금지해서 되겠느냐 이런 토대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秋美愛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위원님들 다수간에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정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金重緯 의견 물어보면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表決을 할까요?

○秋美愛委員 趙贊衡 委員님과 제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李健介委員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당 총무간에 소위 秋美愛 委員이 제기한 제30조8호 新設問題에 대해서는 모두 앞치락 뒤치락하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여론에 밀려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같은데 저는 이 條文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도 힘든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왕 3당총무가 합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3당총무한테까지 돌리지 않고 특위내에서 위원들간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법 자체는 節次法 違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수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3년이하 징역하고 500만원 이하로 조문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인 법 체계를 보면 절차위반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징역형은 삭제하고 벌금만 두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3당총무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우리 특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裁量權은 다른 위원들도 동의하신다면 그 정도 수정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벌금만 하는 것이 1안이고 만일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다면 3년이하를 1년이하 또는 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제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토의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重緯 그 의견도 회의록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李健介 委員님도 당장 벌금만 하자고 했다 1년 정도로 양보하시고 그랬는데 또 부양가족에 한정하자는 秋 委員님 의견도 계시고 이것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토론을 거쳐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은 少數意見으로 회의록에는 다 올리되 의결은 협상한 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李健介委員 그래도 특위 위원들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 총무선까지 안가는데에서 한 10분정도라도 토의를 해봅시다.

○委員長 金重緯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금수수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을 여기서 없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위원회에 대한 國民的 認識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李健介委員 그 문제는 그와 같은 순간적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문제제기한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법의 근본취지라는 것은 순간적 여론에 좌우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할 가치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봅시다.

○委員長 金重緯 회의록에는 올려 놓시다.

○秋美愛委員 위원장님,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을 총무들하고 상의를 해보시지요. 이것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委員長 金重緯 표현에 관한 것이니까 專門委員에게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자구수정은 法司 委에 가서도 할 수 있고……

○秋美愛委員 그런데 순수한 자구수정만은 아니고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아예 犯罪의 構成要件 자체에서 빠져버리는 것이고 보통의 법 체계상 친족간의 절도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라는 범죄행위는 맞지만 처벌만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촌형님이 사촌동생한테 돈이 많아서 정치자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정치자금은 준 것이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수수니까 범법행위는 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해야지 刑法體系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자구수정만은 아니고 구성요건상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에 해당되니까……

○委員長 金重緯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조문은 수도 없이 많이 보았는데……

○秋美愛委員 무슨 개념을 정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委員長 金重緯 이것은 犯罪行爲로 안보는 것입니다. 친족간에 주고 받는 것은 범죄행위로 안보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단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당 총무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다. 그것은 범죄행위로 보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것입니다.

○秋美愛委員 이 자리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 얘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은 얘기같기 때문에……

○委員長 金重緯 李國憲 委員 말씀하세요.

○李國憲委員 秋美愛 委員이 말씀하신 친족상의 예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親族間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범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犯罪가 되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가 안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秋美愛委員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때는 다른 贈與稅 負擔같은 것도 없어지지요. 그래서 말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촌형이 사촌아우한테 정치 좀 잘해보라고 정치자금을 주면 증여세는 내야 됩니다.

○委員長 金重緯 증여세야 稅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秋美愛委員 다른 것은 다 투명하게 하자고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면 안되지요.

○委員長 金重緯 이것 다 律士들이 만든 案입니다. 나는 중간에서 司會만 보았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믿고 넘어가시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李國憲委員 얘기한 김에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검토하는 문제가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선거에 있어서 公明選舉, 公正한 選舉는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현재도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관련된 행위를 수없이 하고 있고 이것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명선거 공정선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地方自治團體長의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약하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한 60일전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에도 辭退期限을 60일전으로 제한했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고려한다면 균형과 형평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적어도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委員長 金重緯 그 의견도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李信範委員 짚막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高費用 政治構造 改革하고는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동하기가 흔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부담을 너무 지나치게 늘리고 있지 않느냐, 또 현수막같은 것을 걸어놓고 선거하는 나라가 과연 OECD에 가입한 국가중에 있느냐, 이런 문제도 흔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불만스럽기는 합니다.

특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國會가

憲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국민의 基本權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屋外集會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集會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憲法訴願이라든 내면 國會가 망신 당할 소지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大統領의 任期開始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유고시에는 후임자 선출방법과 대행자의 순위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후임자가 이미 선출되었으니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임할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들 때 그 國事行爲가 과연 합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 특위에서 법률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法司委에서 검토해서 가지고 만일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國會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빼셔도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重緯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李良熙委員 물어만 보겠습니다. 政策研究委員 問題하고 補佐官 問題를 운영에다 넘기신 것입니까?

○委員長 金重緯 보좌관 문제는 國會議員手當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순간에 있고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논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李良熙委員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重緯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政治資金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2건의 법률안외에 기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政黨法中改正法律案 등 5건의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議長에게 회송토록 하겠습니다.

7. 政治資金에관한法律과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관한請願(安商守議員 紹介)

(14시51분)

○委員長 金重緯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政治資金에關한法律과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政治資金에관한法律과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改正에관한請願은 앞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指定寄託金制의 폐지 등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불만도 미진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전부 어느 하나도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政策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치한치 발전해 가면서 목표하는데 접근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록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지만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반동안 協商內容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마다 합의된 사항을 의원회 관에다 보내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구체

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複數常任委員會制가 시행되면 여러 위원님들은 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國會의 活動 樣相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의 활동의 大尾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3분 산회)

○出席委員

金重緯	金光元	尹源重	李國憲
李信範	李完九	李在五	崔鉛熙
金珍培	辛基南	柳宣浩	趙贊衡
秋美愛	李健介	具天書	李良熙
鄭宇澤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朴 奉 國
立 法 審 議 官	閔 東 基
立 法 審 議 官	林 仁 奎